##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1686 제출연월일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

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 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 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(안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)
  - 1)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
- 2)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.
- 나.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의 폐지(안 제15조)

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그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경감함.

#### 법률 제 호

##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위하여"를 "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1조에 따른 영해(이하 "영해"라 한다)
- 나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3조에 따른 내수(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수·늪 등은 제외하며, 이하 "내수"라 한다)

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"관제대상선박"이란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(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)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
  - 가.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
  - 나.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. 다만, 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.
  - 다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

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

5. "해양사고"란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영해 및 내수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 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영해 밖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(이하 "영 해 밖 관제수역"이라 한다)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서는 제18조 의2를 적용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"을 "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"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관제에도 불구하고"를 "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"로 한다.

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"을 "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(碇泊) 또는 계류(繁留)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·이동하는 경우"를 "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(停留)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보고"를 "통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"를 "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신고 절차,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(諸元) 등"을 "신고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(諸元) 등"을 "신고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(諸元) 등에 관하여"로 하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)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과 선박교통관 제사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 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

② 선박교통관제관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8조까지"를 "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"로 한다.

1.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 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·조언 또는 지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정보 등의 제공)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.
  - 1. 안전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
  - 2.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또는 조언
  - 3.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
  - 4.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
 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 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 4항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해상기상상태, 항로상태, 해상교통량"을 "해양기상상태, 항로상태, 선박교통량"으로 한다.

제26조 중 "선박교통관제"를 "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"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3호) 중 "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"를 "제14조제3항에 따른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제통신 의무녹음 대상 선박의 선장이 녹음한 관제통신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대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선박교통관제구역"이란 선	2
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<u>위하</u>	<u>위하</u>
<u>여</u>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	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
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	
수역을 말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가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
	제1조에 따른 영해(이하
	<u>"영해"라 한다)</u>
<u>&lt;신 설&gt;</u>	나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
	제3조에 따른 내수(해상항
	<u>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</u>
	수 없는 하천・호수・늪
	등은 제외하며, 이하 "내수"
	<u>라 한다)</u>
<u>&lt;신 설&gt;</u>	3. "관제대상선박"이란 「선박
	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
	선박(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
	선은 제외한다) 중에서 다음
	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	는 선박을 말한다.
	가.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

<u>3</u>. (생 략) <신 설>

제3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대한민 국의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(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 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수·늪 등은 제외한다)에 있는 선박 중 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 박

- 나.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 박. 다만, 「어선법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.
- 다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2조

   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은

   반선
- 라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 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
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5. "해양사고"란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 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영해 및 내수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②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영해

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12조(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 저정) ① 해양경찰청장은 <u>관할 선</u> 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 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제13조(관제대상선박) 선박교통관 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(이하 "관제대상선박"이라 한다)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
  - 2.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(다 만, 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 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 한다)
  - 3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2조제 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

밖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
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
시하는 수역(이하 "영해 밖 관
제수역"이라 한다)에 있는 관제
대상선박에 대해서는 제18조의
<u>2</u> 를 적용한다.

정) ① <u>선박교통</u> 관제구역에서	∥12조(선박교통관제에	관한	7
<u>관제구역에서</u>	정) ①	<u>선박고</u>	ū통
	관제구역에서		
•			

② (현행과 같음)<삭 제>

4.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 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

제14조(선장의 의무 등) ① 관제 | 제14조(선장의 의무 등) ① 관제 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 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 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 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 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 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 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.
-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 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 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 고하여야 한다.
-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 교통관제구역을 출입ㆍ이동하 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

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 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다 만,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 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선박교통 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.

- ----- 지시에 따르는 경 우에도 -----
- 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(碇泊) 또는 계류(繫留)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----.
- 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(停留)하는 경우

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·응답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.

-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 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 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,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(諸元)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관제통신의 녹음) ① 선박 제 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 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에는
<u>통</u>
<u>ঐ</u>
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
교통관제구역에서
6
신고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
제통신의 제원(諸元) 등에 관하
여
세15조(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)
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과 선박
교통관제사는 제14조제4항에 따
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한국
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관련

-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 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 · 권고 · 지 시
  - 2. · 3. (생 략)
  - 4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」 관한 법률 | 제8조부터 제18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. · 6. (생략)

<신 설>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 하여야 한다.
  - ② 선박교통관제관서는 해양경 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) 선 제18조(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) --
  - 1.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 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· 조언 또는 지시
    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  - 4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| 제8조,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----
    - 5. · 6. (현행과 같음)
  - 제18조의2(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정보 등의 제공) ① 해양경찰청 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조언을 제 공할 수 있다.

- 안전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
  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또는 조언
 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
- 4.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
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 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 통신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 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를 준용 한다.

제20조(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)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 구역 내 <u>해상기상상태, 항로상태,</u> <u>해상교통량</u> 및 해양사고 등을 고 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

20조(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) ①
해양기상상태, 항로상태
선박교통량

박의	입항	• 출항	및	이동시간을
조정	할 수	있다.		

#### ② (생략)

- 제26조(벌칙)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(생략)
  - 3. <u>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</u> <u>상선박의</u>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
  - 4.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 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
  - ②·③ (생 략)

·.
② (현행과 같음)
제26조(벌칙)
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
제27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<u>3</u> . (현행 제2호와 같음)
<u>2</u> . <u>제14조제3항에 따른</u>
<u>&lt;삭 제&gt;</u>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